

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기록부

회사명 : 군포도시공사

제 작 회 사 명	(주)테크코리아
기 기 명 칭	굴뚝배출가스[유속]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
형 식	XFLOW-10
형 식 승 인 번 호	제ATMSV-2014-2호
형 식 승 인 연 월 일	2015년 02월 13일
기 기 고 유 번 호	TK-XF-30M-21041
취 득 연 월 일	2021년 03월 29일

검 사 내 용

[illegible]

정도검사 성적서



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242, 시화하이테크 지식산업센터 409호
 한국환경기기시험원(주) (242, Seohaean-ro, Siheung-si, Gyeonggi-do, Korea)
 Tel. 031-498-3357 Fax. 031-8041-3359 Web. www.kemti.co.kr

성적서 번호 KI25-0533-01
 총 3 페이지 중 1 페이지

1. 의뢰자

기관명 : 군포도시공사 환경관리소
 주소 : 경기도 군포시 초막골길 101-58, 환경관리소

2. 검사대상 품목

기기명 :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(유속)
 제작회사 : ㈜테크코리아
 기기번호 : TK-XF-30M-21041
 형식 : XFLOW-10
 형식승인번호 : 제ATMSV-2014-2호

3. 접수일자 : 2025년 4월 10일

4. 검사일자 : 2025년 4월 15일

5. 검사방법

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·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(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-70호, QS 0202.9, QM 0202.9)

6. 검사결과 : 적합 (붙임 정도검사 점검표 참조)

위는 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자가 의뢰한 검사품에 대하여 시험한 정도검사 성적서(정도검사 점검표 포함)임을 증명합니다.

확 인	검사자	이대호 서명	기술책임자	노정만 서명
	성명 : 이대호		성명 : 노정만	

2025년 04월 15일

한국환경기기시험원(주) 대표이사



진위 여부는 Tel. 031-498-335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굴뚝배출가스 유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점검표

1. 일반사항

회 사 명	군포도시공사 환경관리소	제 작 회 사	(주)테크코리아
대 표 자	배재국	제 작 번 호	TK-XF-30M-21041
형 식	XFLOW-10	형식승인번호	제ATMSV-2014-2호 (2015년 02월 13일)
최초 정도검사일	2021년 04월 08일	직전 정도검사일	2023년 04월 12일

2. 구조확인

항 목	내 용	결 과	비 고
가. 측정범위	형식승인서상의 취득한 최대범위 내의 측정범위를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. 다만, 정도검사 수행을 위한 측정범위는 해당기기의 설정된 측정범위를 기준으로 한다.	적 합	형식승인 30 m/s 설정유속 30 m/s
나. 측정방법	피토관, 열선유속계, 와류유속계, 초음파유속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방법이어야 한다.	적 합	피토관식 유속계
다. 배출가스 채취부 (굴뚝배출가스 유속 측정부)	측정방법에 따라 피토관, 열전대, 와류부 및 초음파 센서 등으로 구성 되어 굴뚝 등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유속을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재질은 물리적 반응 및 화학적 반응 등에 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부식, 침착, 온도 및 유속 등에 충분한 기계적인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.	적 합	제조번호 : TK-PT-210283 피토계수 : 0.834
라. 측정구조	측정기는 인슈트 타입이어야 한다.	적 합	인슈트 타입
마. 지시·외부 출력부	측정기는 운용프로그램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, 측정값을 유속 측정단위인 m/s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, 외부출력장치를 갖추고 측정값의 등가 신호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하며 TMS에 전달될 수 있는 신호이어야 한다. 열선형 유속계의 경우는 m/s 또는 Sm/s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.	적 합	측정단위 : m/s

3. 성능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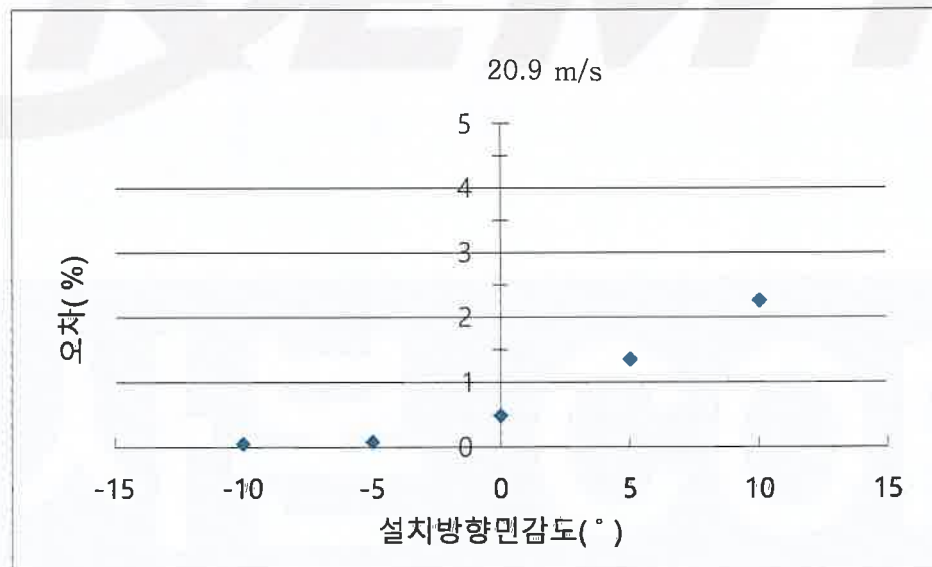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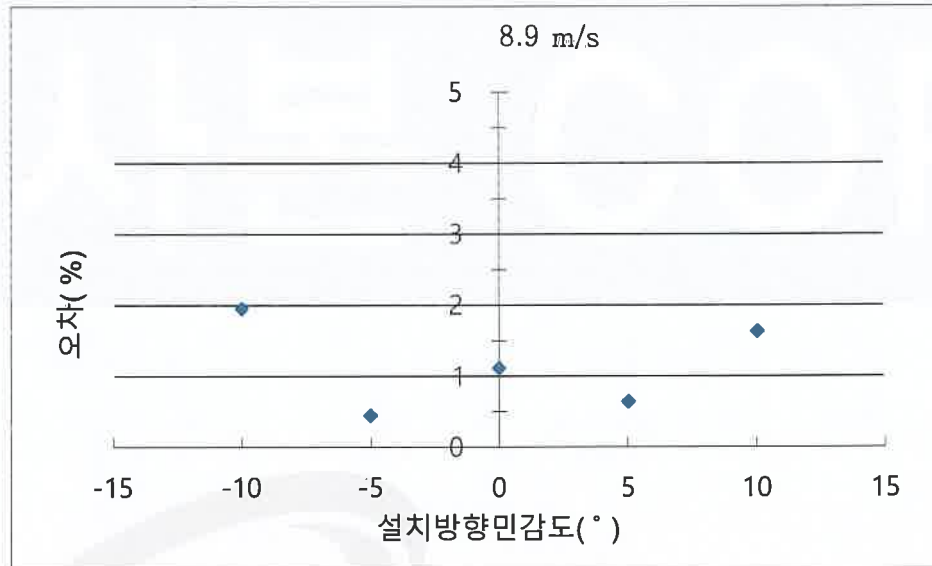
시 험 항 목	시 험 기 준	결 과	비 고
다. 반복성	측정범위의 2.0 % 이하이어야 한다.	적 합	0.3 %
라. 현장적용계수	주시험법 측정값 평균의 20.0 % 이하	해당없음	-
마. 직선성	시험기준유속측정값의 5.0 % 이하이어야 한다.	적 합	1.3 %
바. 설치방향 민감도	± 10°의 설치방향에 대하여 시험기준유속측정값의 4.0 % 이하이어야 한다.	적 합	2.3 %

4. 표시사항

시 험 항 목	시 험 기 준	결 과	비 고
가. 표시사항	형식승인표(수입신고표) 및 정도검사 증명서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.	적 합	부착

종합판정 및 의견	적합	검 사 자	이대호 이대호
-----------	----	-------	---------

- 설치방향 민감도 -



- 이하여백 -